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1.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-31호, 2020.2.6.)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.2.7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.

## 보 건 복 지 부 장 관

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

주무관	성지은	보건사무관	이동우	보험급여과장	전결 02/06
					이종규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623 2020.02.06.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/ je0925@korea.kr

전화 044-202-2737 전송 044-202-3934 / je0925@korea.kr /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